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세칙

제정 2026. 04.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 세칙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간호학과(이하 ‘학과’) 임상실습의 질 관리와 학습성과 달성을 성과기반·지속적 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이하 ‘CQI’)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상실습 운영, 지도, 안전·감염·인권 보호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운영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이란 간호학 전공교육의 일환으로 임상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2. ‘임상실습지도교원’이란 대학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학생 임상실습을 지도·평가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이하 현장지도자)’란 실습기관 소속으로 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평가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4. ‘기관 협력’이란 학과(간호대학)와 임상실습기관이 실습 운영 전반(실습교육, 협약, 배치, 학생전용공간, 안전 및 인권, 평가·환류 및 증빙관리)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
5. ‘실습지도 협의’란 교과목 담당교수(임상실습지도교원)와 현장지도자가 실습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임상실습위원회

제3조(임상실습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 이 위원회는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임상실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임상실습담당 학과장이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총 5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위원장과 각 전공교과목 담당교수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구성 시 임상실습 운영, 예산, 학생 안전·인권, 감염관리 및 성과관리(CQI) 관련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임상현장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학과장(임상실습)의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개선과제를 확정한다.

1. 임상실습교육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
2. 임상실습기관 선정·평가 및 관리
3. 임상실습 안전관리 및 학생인권 보호
4. 임상실습 학습성과 관리 및 성과분석(지표·증빙 포함)
5. 재난위기 상황 시 실습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상실습 교육의 질 관리 및 환류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18조에 따른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19조에 따른다.

제4장 임상실습 운영, 평가 및 학습성과 관리

제9조(임상실습기관의 선정 범위) ① 학과는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공교과목별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임상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실습기관을 선정하며, 임상실습기관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명상 초과 종합병원
2.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3. 특화병원 또는 전문시설
4.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기관
5. 기타 학생들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후생복지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② 학과는 주 임상실습기관을 1곳 이상 확보하며, 해당 기관에 컨퍼런스룸·탈의실 등을 포함한 실습학생 전용 공간이 마련되도록 협력·관리하고, 확보 여부를 정기 점검·기록한다.

제10조(임상실습기관 평가 및 관리) 위원회는 임상실습기관의 적절성(실습단위, 지도방법, 학생전용공간, 안전·인권, 교육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

이행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11조(임상실습 협약) 학과는 임상실습기관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임상실습교육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협약·운영·평가·환류의 전 주기 기록을 관리한다.

제12조(임상실습배치 및 원거리실습지원) ① 학생의 실습 배치는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한 실습단위로 선정하고,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하도록 공통된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 실습 단위당 배치 인원은 8명 이하로 한다.

② 원거리 실습의 기준은 하루 내에 실습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로 한다.

③ 원거리 실습의 경우, 학생 숙소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험·생활 지침을 사전 안내한다.

제13조(실습 전 준비 및 오리엔테이션) ① 학과는 임상실습 시작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오리엔테이션(실습 규정, 출결·평가, 안전·감염·인권,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보고 절차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 학과는 실습기관 요구사항(동의서, 검진·예방접종 및 면역력 점검 자료 등)을 확인·관리한다.

제14조(실습시간) 임상실습시간은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① 1학점은 주당 5일 총 45시간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인증기준 범위 내에서 실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1일 실습시간은 9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권장하며, 실습교과목 특성 및 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상실습 교과목은 최소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교내실습 중 시뮬레이션 실습을 임상실습학점에 포함하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④ 임상실습은 정규학기 중 실습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방학기간 중 실습이 운영될 경우 전체 임상실습기간의 50% 이내로 운영한다.

제15조(임상실습 기간 및 시간) ① 각 교과목 임상실습 기간은 2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실습 과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수업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상실습을 국가공휴일(임상실습기관의 사정 등 포함)등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습교과목별 대체실습으로 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체실습은 학습성과 및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비대면실습, 교내실습, 과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임상실습 교육의 교과목 구성) ① 임상실습교육은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으로 학과 교육과정에 교과단위로 편성 운영하며, 각 교과목은 학습성과와 평가 기준이 명확히 연계되도록 관리한다.

② 임상실습 교과목은 성인간호학실습 I-III, 통합성인간호학실습, 여성건강간호학실습, 아동건강간호학실습, 정신건강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및 시뮬레이션실습 I-III으로 한다.

제17조(평가기준) ① 임상실습교육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에 의해 평가된 임상실습 평가서에 의거하여 평가 및 제출하되, 평가도구·기준·증빙자료를 사전에 공지하고 관리한다.

② 임상실습 성적 평가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현장지도자 평가 30~40%
2. 임상실습지도교원 평가 30~40%
3. 과제 평가 10~20%
4. 출석 20%

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성적평가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출석) ①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출결 현황은 기록·관리한다.

② 학생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45시간을 이행해야 출석점수 최고점을 부여한다.

제19조(결석) ① 유고결석(공결 포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임상실습지도 교원과 현장지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유고결석(공결 포함)의 인정사유는 「학칙시행세칙」 제35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고결석을 인정하는 증빙서류는 임상실습지도자와 현장지도자에게 실습기간 내에 제출하여 출석 인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석일수가 총 실습시간의 1/4이상일 경우(유고결석, 공결, 조퇴 포함)에는 해당 교과목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체·보강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복학생의 임상실습)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해당하는 방학 중의 임상실습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학생의 실습 중단) 임상실습 기간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임상실습기관에서의 실습정지 통보, 실습 인원 감축 등 학교 및 학과의 명예실추와 손실을 초래한 학생은 ‘임상실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소명 기회·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당해 학기 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22조(임상실습 교육의 학습성과 적용 및 관리) ① 임상실습교육의 학업성과는 이론교육과 연계된 실습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성과를 적용한다.

②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는 교과목별 수업계획서의 ‘학습성과 평가 계획안’에

기초하여 정량·정성 지표로 매 학기마다 평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CQI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제23조(실습연계 핵심간호술 평가 및 관리) ① 학과는 임상실습 교과목에 연계된 핵심간호술을 평가하고 관리 및 개선한다.

② 핵심간호술 평가는 단계별 성취 수준에 따라 실시하고, 미성취 학생에게 재학습 및 재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행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24조(임상실습 교육관련 예결산) 위원회는 임상실습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위원 회의 결정에 따르되, 성과 연계 집행·점검 결과를 환류한다.

제25조(재난위기상황 시 임상실습 운영) ① 국가에서 공고한 감염성 질환 및 국가 재난 위기 상황 등에 따라 임상실습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체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대체실습이라 함은 재난위기 상황에 따른 임상실습 결손을 충당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재난위기 상황 시 실습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따르며, 학생·교원에게 공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대체실습은 제7장 ‘재난·위기 임상실습교육 운영’에 따른다.

제5장 임상실습지도 및 학생 책무

제26조(임상실습 지도) ① 임상실습 지도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가 담당하며, 임상실습지도교원의 학생실습지도 시간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실습지도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 임상실습 시작 전 실시
2. 실습기관 오리엔테이션 : 필요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3. 현장 순회지도 : 실습단위를 방문하여 현장지도 실시
4. 집담회 : 실습 중 또는 실습 후에 교내 및 실습기관 내에서 실시
5. 그 밖의 실습지도는 실습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시 가능

③ 교육내용은 실습지침서를 활용(사례 발표, 교수의 지도 및 피드백, 목표달성 점검, 퀴즈 등)하여 표준화된 지침과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지도한다.

④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는 실습지침서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도구에 따라 평가한다.

⑤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실습학생이 실습 중 긴급 상황 발생 시와 필요시 현장지도자와 실습담당 학과장에게 비상연락망·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제27조(실습지침서의 구성 및 활용) 교과목 담당교수는 실습교과목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핵심간호술을 반영하여 학생용과 지도자용으로 실습지침서를 제작하고, 이를

실습지도에 활용한다.

① 학생용 실습지침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교과목 학습성과(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간호술 연계 포함)
2. 실습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도구, 배치표, 실습학점
3. 실습지도교원의 지도 현황(지도자명, 지도 일시·장소, 지도 내용) 기록 방식

②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는 실습지도계획서(실습병동/부서, 요일별·시간별 계획, 기관명, 실습단위별 지도 내용·방법·평가방법 등)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실습지침서는 교과목별로 관리하며,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한다.

제28조(임상실습지도교원의 자격 및 역할) ①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과 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강사)로 한다. 전임교원은 전공이론 교육과 연계된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임상실습기관과 임상실습 사전 간담회와 임상실습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외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습교육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현장지도자 자격은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서 현장지도자로 위촉된 자이며, 간호사로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⑤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각 실습현장에서 전임교원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 실습 지도를 한다.

제29조(현장지도자 확보 및 협의) ① 학과는 현장지도자를 실습단위별로 100%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보 현황·자격·위촉·협의 기록을 관리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현장지도자의 역할, 지도 내용, 평가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③ 현장지도자는 전공 지식과 전문가적 태도를 포함한 교과목 학업성취 평가에 참여한다.

제30조(학생 책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한다.

1.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대학과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2. 실습기관의 내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3. 간호전문직 수행표준, 법적·윤리적 원칙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한다.
4. 임상실습 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의 지도에 대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5. 실습기관에서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6. 안전사고 또는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포함) 발생 시 즉시 지정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실습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따른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 학생 및 교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서약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한다.

1. 실습기관 및 환자의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기밀을 지킨다.
2. 실습시간에는 물론 공공장소에서 환자나 실습기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3. 대상자 의무기록을 복사하거나 촬영하지 않는다.
4.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집담회 발표 및 교육목적으로만 활용한다.
5. 실습 중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영상·녹음 자료는 교육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보안조치·보관·파기 기준을 준수하여 기관 및 대학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6. 기타 실습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따른다.

제6장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제32조(임상실습 안전관리) 임상실습 안전 관리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① 학생은 임상실습 안전을 위하여 1학년 1학기에 간호대학이 정한 항체검사 및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지 및 소견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 ② 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까지 1항의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예방접종이 미비된 학생은 면역력 점검을 의무로 요구하는 실습기관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대학은 임상실습을 위해 실습학생들에 대한 ‘실습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현황을 학생에게 고지한다.
- ④ 학과는 교원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작 전에 연 2회 이상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 ⑤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1]의 「간호대학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보고체계」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사고 처리 기록을 보존한다.

제33조(학생 인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 ① 학생은 임상실습 중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과는 교원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작 전에 연 2회 이상 인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생 인권 침해 및 성희롱 피해 발생시 [별표2]의 「간호대학 임상실습 학생인권 침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상담·조치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제7장 재난·위기 임상실습 교육 운영

제34조(재난·위기 임상실습교육 운영 목적) 감염병 유행, 국가재난 및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상실습 운영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습성과 달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적용범위 및 적용 시기) ① 재난·위기 상황이란 감염성 질환의 유행(MERS, COVID-19 등) 또는 국가재난안전사고로 인해 임상실습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재난·위기 상황 시 학과에서 운영되는 모든 임상실습 교과목에 적용한다.

③ 적용 시기는 임상실습 제한 결정 시점부터 정상 운영 재개 시점까지로 한다.

제36조(운영 원칙) ①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대체 실습은 교과목 학습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운영한다.

② 전 과정에 지속적인 질 개선과 성과관리를 적용한다.

③ 관련 법령, 본 대학교 관련 규정, 「간호대학 운영내규」 및 간호교육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제37조(주관 및 책임) ① 재난·위기 실습교육 운영의 총괄 책임은 간호대학장에게 있다.

② 간호대학장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실습 제한·대체 실습 전환·운영 방식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절차에 따라 공지한다.

제38조(운영 조직 및 역할) ① 위원회는 재난·위기 실습교육의 대체 실습 운영 원칙, 운영계획, 평가 및 성과관리(환류) 사항을 의결·심의한다.

② 간호대학장은 필요시 “재난·위기 실습교육 운영 TFT(이하 TF)”를 구성할 수 있으며,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위기 상황 분석 및 임상실습 제한 수준(전면/부분/단계적)의 검토
2. 교과목별 대체 실습 운영안(학습성과, 시수, 운영방법, 평가) 마련
3. 실습기관 및 교내 관련 부서(안전, 보건, 학생지원, 정보보안 등)와의 협의
4. 학생·교원 대상 안내, 안전·인권 교육, 민원·이의신청 대응
5.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안(정상 복귀·보충 포함) 마련

제39조(대체 실습 운영 원칙) ① 재난·위기 상황으로 임상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내실습, 시뮬레이션실습,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체 실습은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운영한다.

③ 대체 실습 운영 시에도 교육의 질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④ 대체 실습 운영계획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0조(대체 실습 유형 및 운영 기준) ① 교내 대체 실습은 실습실, 시뮬레이션센터,

온라인 학습 환경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② 실습시간은 1학점 당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 및 인증 기준을 준용한다.

③ 학생 배치 기준은 지도교원 1인당 2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교과목별 실습지침서는 대체 실습 상황을 반영하여 보완·활용할 수 있으며, 학습성과와 평가 기준이 반영되도록 한다.

⑤ 교육자료(사례, 영상 등)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며, 녹화·촬영·배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 시 사전 동의 및 보안조치를 시행한다.

제41조(안전관리 및 학생 보호) ① 모든 대체 실습은 본 대학교 「안전관리 규정」 및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② 재난·위기 상황에서 실습 운영 시 보험, 비상연락망,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한다.

③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습 환경을 조성한다.

제8장 성과 평가 및 환류

제42조(학업성취 최종 확인 및 결과 분석) ① 위원회는 임상실습 교과목별 학업성취 달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성취 향상(재학습, 추가 과제, 재평가 등)과 임상실습 운영 개선(CQI)에 반영하고, 재학습·추가 과제·재평가 결과를 기록한다.

③ 분석 및 환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자료로 관리한다.

제9장 보고서 및 자료관리

제43조(보고서 및 자료관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작성·관리한다.

1. 부서별 운영계획서
2. 부서별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3. 학과 사고대응 매뉴얼
4. 임상실습 성과 증빙자료

② 위원회는 다음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한다.

1. 임상실습기관 선정·평가 자료, 협약서, 임상실습기관 학생전용공간 확인 자료
2. 기관 차원 협력 실적(회의록, 공문, 사진, 참석자 명단 등)
3. 현장지도자 확보 현황, 자격 확인 자료, 위촉 자료, 협의 실적, 평가 참여 근거
4. 실습지침서(학생용·지도자용), 배치표, 실습지도 일지, 평가도구 및 성적 근거
5. 안전·인권 교육 자료, 보험 가입 자료, 비상연락망,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고 처리 기록

③ 자료의 보존기간은 대학(학과)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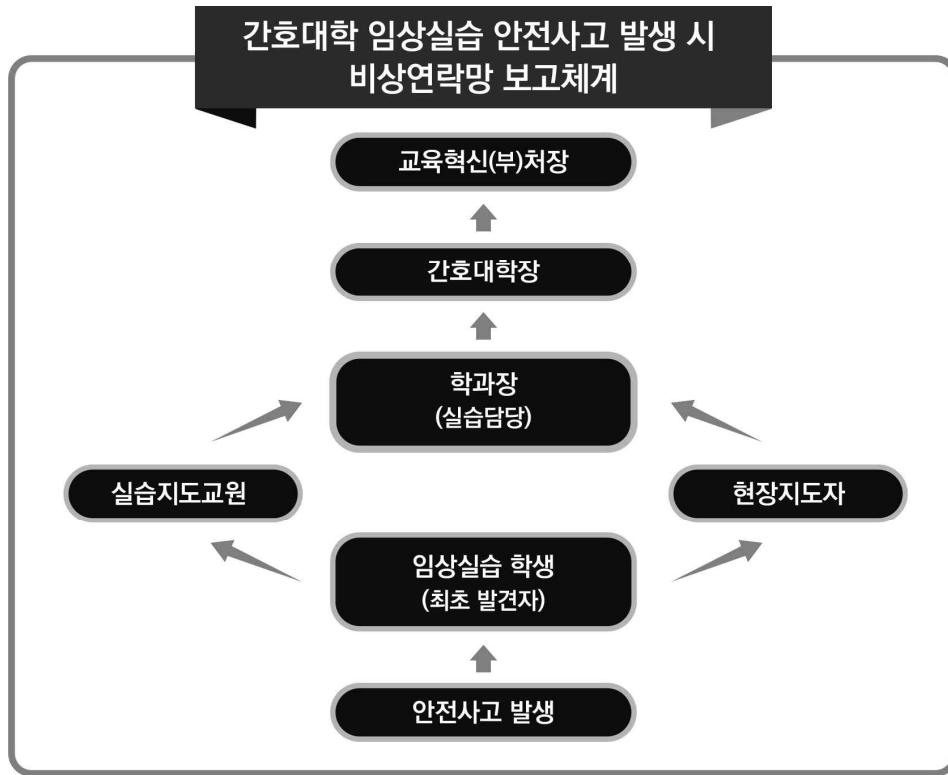
제44조(준용)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56조에 따른다.

제45조(운영세칙 개정)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

부 칙

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간호대학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별표2] 간호대학 임상실습 학생인권침해 보고체계

